

##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공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 하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 **지원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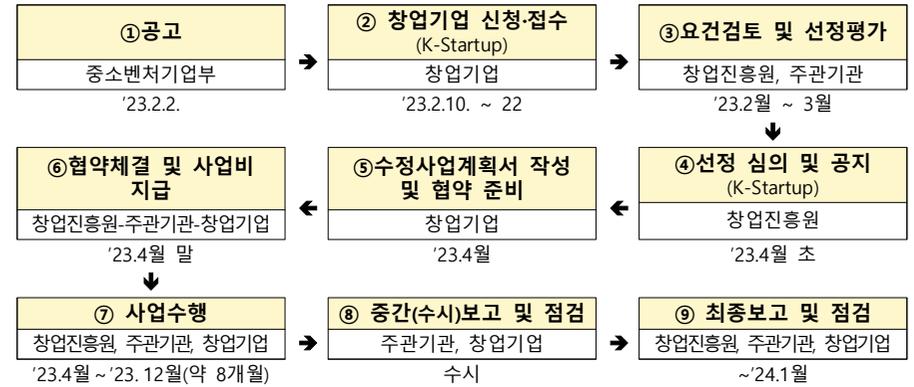
- **지원대상** : 6개 기술분야의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 **관련 참고**

- ▶ **6개 기술분야** : 복합소재, 산업용IoT, 스마트엔지니어링, 융합바이오, 친환경, 반도체 기술분야 세부내용은 [첨부3] 참조
- ▶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첨부4] 참조
- ▶ **신산업의 범위** : [첨부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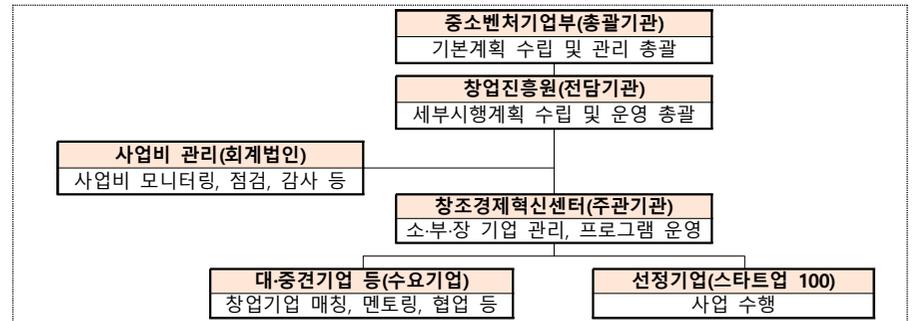
- **지원규모** : 총 40개사
- **지원내용** : ①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② 수요기업 매칭, ③ 성장촉진 프로그램, ④ 기타 연계지원(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 등)
- \* 사업화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 사업절차 및 모집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운영체계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2023.2.2.)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 단, 신산업 분야\*에 해당될 경우 업력 10년 이내인 기업
  - \*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인·검증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 소재·부품·장비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6년 2월 2일 ~ 2023년 2월 2일  
단, 신산업 분야에 해당될 경우 : 2013년 2월 2일 ~ 2023년 2월 2일
-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첨부4)을 영위하거나,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추가가 가능한 자
  - \* (첨부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 제외대상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 동 사업을 운영 중인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창업기업 선정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자는 자(기업)
- ▶ 모집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재참여 불가)
-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지원내용

#### ①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창업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 현물)으로 부담
  - \* 대응자금(현물) 예시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안)(예시포함) >

	총 사업비 (100%)	사업화자금 (정부지원금)(80% 이하)	대응자금(20% 이상)		
			현금	현물	합계
예시1	250백만원	200백만원	-	50백만원	50백만원
예시2	250백만원	200백만원	50백만원	-	50백만원
예시3	250백만원	200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50백만원

< 사업비 집행비목 >

▶ 사업화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수요기업 상시 매칭 지원

- 창업기업에서 제출한 기술소개서(RFP)를 바탕으로, 수요기업과 상시 매칭 및 멘토링 제공

\* 기술소개서(RFP) : 창업기업의 기술(제품) 소개, 동향 및 수준 등을 기술한 자료로써, 사업 선정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자료

## ③ 성장촉진 프로그램

- 전담·주관기관의 교육·IR·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지원

### < 프로그램 운영(안) >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육	· 회계교육, 정부정책 교육, 지식재산교육 등
IR	· 기업소개자료 제작, 피칭 교육, 투자사 미팅, IR 등
네트워킹	· 수요기업 실무자 및 투자자 등 다양한 업계 관련자 네트워킹
기타	· 창업기업 특성을 고려한 주관기관별 자율 기획 프로그램

## ④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발급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에게는 선정서 발급

## ⑤ 기타 연계지원

-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 등 기술·경영지원 수단 연계
  - \* 각 항목별 담당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선정하며, 기업별 지원이력, 경영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차등 적용됨
  - **정책자금** : 기업당 융자 한도우대 60억원(지방 70억원) → 100억원, 우량기업·중복지원 등 융자제한 기업 적용 예외 혜택
  - **기술보증** : 수요기업에 한도우대, 보증료 및 심사완화 혜택
  - **수출** : 해외마케팅 지원 패키지인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시 가점(1점)

##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 2월 22일(수), 16:00 까지

### ※ 유의사항

-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제출완료’ 되어있지 않는 경우, 최종 접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음)
- 3) **접수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최소 1단계 저장 완료)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16: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함
- 4) **접수마감 시간(16:00)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접수가 불가함**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

###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절차	주요내용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접속
② 사업 공고 세부내용 확인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 메뉴에서 ‘2023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 클릭
③ 기본정보입력	· 신청자(기업)의 기본정보 입력(1~5단계 입력) · 주관기관 선택: 서울/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1개 선택 · 희망 수요기업 작성(최대 5개): 사업 선정 후 협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입력
④ 사업계획서 업로드	·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여 저장 ※ 업로드 파일은 30MB 이하로 설정
⑤ 제출	· ‘제출하기’ 클릭 및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 유의사항**

- **접수결과 확인(필수)** : '사업신청관리' 클릭 → 사업신청내역조회 → 접수상태 "제출 완료"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 사용 불가

## 5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1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자격요건 검토	전담·주관기관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 요건검토
1 단계 서류평가	주관기관	· <b>평가내용</b> : 목표설정, 혁신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 발표평가 대상자 2배수 선정
2 단계 발표평가	전담·주관기관	· <b>평가내용</b> : 기술성, 확장성, 성장성
최종선정	전담기관	· 최종선정 공지 ·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배정 등 심의
	주관기관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안내

\* 자격요건 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소재·부품·장비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창업아이템, 산출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체결 전,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 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응자금(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현물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중간·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7 유의사항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였음이 선정평가 과정 중 확인되면 대상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선정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선정 취소 및 통합지침에 따른 참여제한, 사업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K-Startup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창업사업화를 목적으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타 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앙부처 “사업화”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과 복수의 중기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된 경우, 동 사업 협약체결시까지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

○ 발표평가 시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함

○ 전담기관은 창업기업 선정 완료 후, 기업 소재지 등 접근 편의성과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주관기관-창업기업’ 매칭 시행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의 협약 포기,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창업기업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현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협약체결 시 납부 기한 내 대응자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결제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및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8 문의처

### □ 사업문의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044-410-1690, 1691
- **주관기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연락처
- \* 전체 기술분야 담당

주관기관명	연락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789
	02-798-9833
	02-739-8169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24
	054-470-2637
	054-470-2658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첨부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중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	창업아님
		이중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창업의 범위 신·구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0.8.)
<p><b>제2조(창업의 범위)</b>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li> <li>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li> </ol>	<p><b>제2조(창업의 범위)</b>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 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li> <li>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 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li> <li>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li> <li>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li> </ol>
<p>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p>	<p>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p>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첨부2**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첨부3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기술분야

- ① 스마트엔지니어링** : 제조 전주기의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로 연결된 소재, 설계, 공정의 유기적인 결합 관련 분야

  - \* 모빌리티 구조부품, 금속·복합재 적층제품, 플랜트용 강판 배터리·연료전지 최적화 등의 개발
- ② 복합소재** : 경박단소화가 강조되는 부품, 장비에 필수적인 고강성, 고내구성 등 물성 향상을 위한 소재 복합화 관련 분야

  - \* 복합소재의 장기 내구성 확보, 전도성·방열성 향상, 내마모성·내식성 향상, 고기능성 복합소재의 가공성 향상기술 등의 개발
- ③ 융합바이오** : 바이오, ICT, 나노 등 융합에 기반한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장비, 진단기기, 의약소재 등 개발에 관련된 분야

  - \* 바이오, ICT, 나노 등 융합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로봇, 바이오 장비(센서 등), 진단기기, 의약 소재 등의 개발
- ④ 산업용 IOT** : IT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감독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 분산제어시스템, PLC 간 네트워크 관련 분야

  - \* 5G 등 산업용IoT 통신장비, 스마트 센서, 스마트액추에이터, 산업용 AR/VR,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등의 개발
- ⑤ 친환경** :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에 기여하는 탄소중립, 석유화학제품 대체,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분야

  - \*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친환경 소재, 탄소포집·제거, 환경센서·장비 등의 개발
- ⑥ 반도체** : 반도체 설계, 소자, 소재, 공정, 장비, 패키지 및 테스트 등을 위한 반도체 관련 분야

  - \*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공정장비, 반도체 패키징 기술, 반도체 테스트 기술, 설계자동화툴, 반도체 소재 등의 개발

## 첨부4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면 방직사 모 방직사 화학섬유 방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2 17125 171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20111 20119 20121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대상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	21101 211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키징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111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 기계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압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33 24191

대상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동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1 25912 25913 25914  25921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25995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 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 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전자 축전기 전자 저항기 전자카드	26111 26112 26121 26129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26224 26291 26292 26293

대상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 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기억 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294 26295 26299 26321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66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111 27112 27191 27192  27193 2719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301 27302 27309 27400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방전 램프용 안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축전지	28111 28112 28113 28114 28119 28121 28122 28123 28201 28202

대상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301 28302 28303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기타 기관 및 터빈 유압 기기 액체 펌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구름배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일반 저울(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직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29142 29150 29161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1 29192 29193 29194 2919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41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4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부품 자동차 차체용 부품 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부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부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부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부품	30110 30310 30320 30331 30332 30391 30392 30393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114 31202 31321 31322 31910 31920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부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되고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212  27213 27216 27219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직축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50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92 29199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9

비고

1.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첨부5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첨부6 수요기술 리스트(174개)

no	분야	수요기술	수요기업
1	스마트 엔지니어링 (34개)	AI,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제조 기술(Meta Manufacturing)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시각화 S/W 기술)	LG이노텍
2		D.C Relay(3D 프린터 세라믹 기반 유무기 소재)	LS산전
3		Ceramic Chamber 제작 속도 증대 기술	LS일렉트릭
4		자동차 Control Arm 알루미늄 차압주조 공법적용개발(재강설비부품)	기승공업(주)
5		자동연마 시스템(자동화 연마 전문화 로봇)	세아메카닉스
6		무금형 메탈 프레스(절곡) 기술	신성델타테크
7		자동차 차체 구동/제어 시스템	신영
8		고기능성 두 칼라강판을 활용한 제품 및 시공(압연롤)	아주스틸(주)
9		디지털 프린팅 방식 메탈/스틸 표면 인쇄용 잉크 및 인쇄기술	아주스틸(주)
10		고경도, 신소재 베어링(볼베어링)	일진베어링
11		충격 보호용 이차전지용 파우치(내외장재)	(주)백셀
12		리튬이온전지 특화 이모빌리티용 모터	(주)백셀
13		자동차 전장 제어관리(레이더 투과 커버, 시스템, 소재 등)	(주)삼광
14		자동차 공조관련(실내 공기 살균정화 모듈 )	(주)삼광
15		VR 디바이스용 양산용 광학 모듈	(주)삼광
16		자율주행 센서 및 나이트비전용 카메라 기술	(주)성우스마트랩
17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수전해용 관리 시스템)	(주)세중아이에스
18		저가형 물류이동 로봇 및 서비스 로봇, 특수공정 로봇	(주)인탑스
19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배터리 검사 기술 (디스플레이용 검사장비 Tool 및 부품)	(주)제일테크노스
20		배터리 화재발생시 자체 진압 기술 & 예방기술	(주)제일테크노스
21		고효율 플라즈마 살균기(전기전자 검사 및 표면처리용)	(주)한성전자
22		소형화된 다축 직교 로봇(부품조립기술 관련 저가형 로봇)	(주)한중엔시에스
23		지능형 기능성 사출 성형 및 소재 (폴리머 제조기술)	(주)한중엔시에스
24		자동차 동력전달 장치(액츄에이터 등)	(주)화신
25		헬스케어 가전기기(편리성, 인체무해, 정확성 등)	(주)화신
26		철강표면 검사 및 연마 기계 장치 개발	포스코
27		로봇(위험지역 작업자 대체), 이동기기 자율주행 및 제어, Edge Computing, 5G 기반 통합 관제, AR/VR 기술 등	포스코
28		기존 육류제품을 대신할 고수분 대체육 제조공법 (HMTA) 이용 솔루션 및 압출기술	포스코
29		양안 방식의 산업용 AR 스마트 헬멧 기술	포스코

no	분야	수요기술	수요기업
30		다공질 세라믹 석션롤로 원단(제품) 주행성 향상기술(정밀생산기계)	피엔티
31		고밀도 우레탄 에어척(air chuck, 고효율 Blower)	피엔티
32		피뢰기 생태진단용 저항성전류측정기	한국수자원공사
33		Recycle 원사를 활용한 요트 바닥재용 원단 기술	한양에코텍
34		적층 제조 기술을 이용한 선박 구조 부품 스마트 제조 공법	현대중공업
35	복합소재 (26개)	나노 CNT 분산 기술	KCC
36		고함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제조 기술	KCC
37		고내구성 실리콘계 음극재 제조 기술	KCC
38		리튬이온전지 모듈 and/or 팩용 화재확산 방지소재	KCC
39		재생가능한 이산화탄소 흡착소재	LG전자
40		고효율 흡착소재(다양한 가스) 및 흡착소재의 성형/가공 기술	LG전자
41		친환경, 고신뢰성 유기 복합 소재(단열/재진/흡음/차음)	LG전자
42		자기 정렬 광원 구비 카메라 기술(이미지 센서, Micro LED)	LIG
43		철근 대체 내식성 GFRP REBAR 개발을 위한 자원순환 복합소재 제조 및 활용기술	SK에코플랜트(주)
44		친환경 · 저비용의 흑연 재활용 공정 기술	SK에코플랜트(주)
45		차세대 건축물 실내 항균/항바이러스 기술	금성백조그룹
46		설치 용이한 철근콘크리트 벽체 진단보강재	금성백조그룹
47		금속재(알루미늄 등) 대체 소재	롯데캐미칼
48		복합분사법에 의한 고투자율의 비정질(나노결정) 금속합금분말 개발	제닉스
49		AI 및 CAE 등을 활용한 고수명 전극 설계	(주)SKC
50		Personal Mobility 用 무선충전 Station	(주)SKC
51		차세대 CMP Pad 제조 기술	(주)SKC
52		MIM(Metal Insert Mold) 제조 기술(티타늄/SUS 분말)	(주)인탑스
53		그래핀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2차전지)용 방열 소재	(주)인팩이피엠
54		무기물계 소재를 함유하는 준불연 패브릭 및 흡음소재(고효율단열재)	(주)카보랩
55		고열전도 특성을 갖는 고밀도 기능성 사출소재	(주)한중엔시에스
56		고품질 CVD 그래핀 톨투를 연속 생산 및 응용	포스코
57		공동주택 입주민 편의 증대를 위한 기술 및 제품 (층간소음, 보안, 물류 등)	포스코
58		해양 및 담수 등 부식환경 시설물 (수상태양광 등)에 적용 가능한 소재 및 재질	포스코
59		2차전지 소재 중 음극재 첨가물	한라그룹
60		UAM 부품 및 소재	한라그룹

no	분야	수요기술	수요기업
61	융합 바이오 (16개)	세포외소포 세포응집체 생산장비 기술	GS
62		환경 수분리 생분해 PET라벨 접착제	GS홈쇼핑
63		Biosurfactant 발굴 및 개발	LG생활건강
64		공기중 부유세균/바이러스 실시간 측정 기술 (2만원 이내 저가 구현 가능 기술)	LG전자
65		인체 노출 시 위험성이 없는 UV 살균 기술	LG전자
66		즉각적인 효과를 얼굴(피부, 눈썹, 입술, 등)에 줄 수 있는 소재	L'Oreal
67		전문 시술 또는 피부과 기술에서 파생되는 화장품용 ("Home") 장비	L'Oreal
68		화장품 또는 뷰티 분야에서 사용되는 물 사용량 감소 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술	L'Oreal
69		반려견 헬스케어 기능성 천연소재 (면역개선 식품, 영양제, 치료제)	대웅제약
70		이미지 해석 현장형 자동혈구 분석시스템	에이비엘바이오
71		상처 치유 및 재생관련 제조합 성장인자 발굴 개발	엘엔씨바이오
72		생분해성 흡수성 약물방출 스텐트	지오씨(주)
73		디바이스 프리 생체 반응형 AI 퍼트니스	카카오VX
74		이산화탄소 포집 저감 및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	포스코
75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100% 생분해 가능 플라스틱 대체 소재	포스코
76		생물학적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 기술	포스코
77	산업용 IoT (45개)	산업용 IoT 관련 기술(정밀측위 기술)	LG이노텍
78		AR용 Micro LED기술	LG이노텍
79		초소형 카메라용 렌즈/줌/패키지 기술	LG이노텍
80		차량용 렌즈 솔루션 : Anti Glare, 투과율 개선 코팅, 고내열 소재 기술	LG이노텍
81		수차 보정을 위한 별도 광학계가 필요없는 AR글래스 기술	LG이노텍
82		헬스케어용 Flexible 또는 Stretchable 기판	LG이노텍
83		학습 및 인지능력이 포함된 로봇용 카메라	LG이노텍
84		인공 신경망 연산 처리 장치	LG이노텍
85		H/W 관련 기술 - 자율주행용 센서	LG이노텍
86		H/W 관련 기술 - AR/VR 디바이스	LG이노텍
87		차세대 V2X 보안 플랫폼	LG전자
88		고출력(250mW 이상) UVC LED	LG전자
89		5G 이동통신용 안테나, 커넥터 등 광통신 부품	LS엠트론
90		IoT를 활용한 APT 배수펌프 무선화	금성백조그룹
91		성능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AI 활용)	넥센타이어
92		360도 커버리지 mmWave 5G 안테나	다산네트웍 솔루션즈

no	분야	수요기술	수요기업
93		머신비전 카메라를 활용한 로봇용 그리퍼	두산로보틱스
94		Window(Glass or 사출)용 Hidden Display 구현 기술	신성델타테크
95		보안 아키텍처 기반의 범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에스윈
96		Digital Twin 구축 및 운영	포스코
97		AI 기반 설비 예지 정비(잔존 수명 예측 등), 컴퓨터 비전,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 및 IoT 센서	포스코
98		산업재 물류 최적화 : 철강재(코일) 피킹/이송 자동화, 물류Tracking 효율향상, 물류 빅데이터 수집/증개 플랫폼	포스코
99		물류/유통 미래형 Picking, GTP(Goods To Person) 솔루션 및 최적 제어	포스코
100		해운/항만 물류 스마트화 솔루션	포스코
101		거주자 맞춤형 헬스케어 및 주거환경 조성, 지능형 홈 오토메이션	포스코
102		데이터 축적 위한 센싱 기술 : 매핑, 영상분석(작물 등), 기상, 생육상태, 재배관리, 병충해 검출 등	포스코
103		농장 관리 소프트웨어(플랫폼)를 통한 생산/관리 기술	포스코
104		AI와 센싱, 자율주행 기술 등 접목한 농작업의 자동화 : 과중/수확/방제 등 작물 재배 자동화 (인건비 절감)	포스코
105		설비원격 진단용 AI IOT 센서(설비 예지 보전용 센서)	포스코
106		스마트 휠 센서(Tyre Mounted Smart IoT 센서)	포스코
107		2M 이상 고소작업용 추락사고 방지 장치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08		ICT 관련 장치와 현장 안전관리기능이 접목된 안전관리시스템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09		정전기 방전 검지 기술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10		비접촉 케이블 노후화 감지 센서 (전류 감지 및 고장 예측 시스템 적용)	한국중부발전
111		폐배터리 진단 및 평가기기, SOH, 셀밸런싱	한라그룹
112		전기차 급속충전 장비	한라그룹
113		IoT 헬스케어 장비	한라그룹
114		IoT 및 센서 디바이스를 통한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	한솔PNS IT
115		스마트팩토리 적용 범용성 있는 Any solution IoT 진단 센서	한솔PNS IT
116		비전 AI를 활용한 불량 검출, 예측 등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Open API를 통한 호환성 가능)	한솔PNS IT
117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분야 실시간 감지, 제어 디바이스 및 에너지모니터링 솔루션	한솔PNS IT
118		신재생 에너지 분야 유지보수(O&M) 원격 설비 및 제어 솔루션	한솔PNS IT

no	분야	수요기술	수요기업
119		머신비전 적용 사물 객체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관리 솔루션	한솔PNS IT
120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공정 및 운영 최적화 솔루션	한솔PNS IT
121		의료기관용 환자상태 모니터링 IoT 디바이스 및 클라우드 솔루션	한솔PNS IT
122		AI 페트병 수거 수집 로봇	GS 건설
123		친환경 부직포 소재 및 친환경 고효율 필터 소재	LG생활건강
124		공기조화시스템용Compact 저소음 정밀 전자팽창밸브개발	LG전자
125		무독성, 친환경 향균 소재	LG전자
126		저회도류 자석개발 및 재생 기술(폐자석 리사이클링)	LG전자
127		화장품 1차 포장재(바이오, 플라스틱, 기타 케미컬 사용 최소화)에 기여하는 모든 신소재)	L'Oreal
128		AR(Anti-Reflective) & ASS(Anti-Static & Soiling) 코팅 기술(태양광 AR/ASS 모듈, 자동차/카메라/건축용 기능성 Glass)	OCI
129		저탄소 등 친환경 산업 관련 기술 (그린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리사이클링 등)	SK에코플랜트(주)
130		반도체 부산물 폐황산의 저탄소 친환경 재활용 기술	SK에코플랜트(주)
131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풍하중 저감 공명형 방음벽	SK에코플랜트(주)
132		커피부산물(추출박, 찌꺼기, 껍질 등) 활용 기능소재	롯데중앙연구소
133		3D 푸드 프린팅용 카트리지 소재	롯데중앙연구소
134	친환경 (32개)	식품부산물(커피추출박, 찌꺼기, 껍질 등)을 활용한 포장재 제조 기술	롯데중앙연구소
135		플라스틱 사출성형물용 친환경 표면처리 기술	신성델타테크
136		ESS, 태양광 안전점검장비(보호설비 및 품질 분석)	전기안전공사
137		생분해(Bio) 필름용 레진조합, 가공기술	(주)SKC
138		전기변색 스마트 윈도우 필름	(주)SKC
139		친환경(폐수) 처리 공법/장비	(주)SKC
140		신재생시스템 연계 폐배터리를 이용한 친환경차 충전 시스템	(주)케이퓨얼셀
141		非배터리기반의 중소형 에너지 저장 기술	포스코
142		소규모 분산발전을 위한 터빈/엔진 기술	포스코
143		플렉시블 태양광 모듈 기술	포스코
144		건설현장 및 환경시설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ex) 음식물류 처리시설 내 유분 분리장치 등	포스코
145		제강 슬래그와 폐플라스틱 융합한 자원 재활용 기술	포스코
146		ICT 기반 상수도 스마트 원격 UT(초음파 검사) 장치	한국수자원공사
147		산업용 친환경 소재	한라그룹

no	분야	수요기술	수요기업
148		페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기술	한라그룹
149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 관리 솔루션을 통한 수요 예측과 수요 관리 솔루션	한솔PNS IT
150		친환경 종이 및 제지류 리사이클링 기술	한솔PNS IT
151		공장 내 오염물 배출, 필터 교환 주기 관리 스마트팩토리 기술	한솔PNS IT
152		빌딩, 건물, 가정, 공장 내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한솔PNS IT
153		자동차용 시트 및 내장재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현대자동차
154		반도체 (21개)	반도체 소재용 속경화 가능 low CTE epoxy resin 개발
155	저농도 가스센서 소자 기술		LG전자
156	Thin Color Filter material		SK하이닉스
157	CMOS 이미지 센서에 적용 가능한 meta lens 기술 (재료, 공정 기술 등)		SK하이닉스
158	CXL 메모리용 IP 기술		SK하이닉스
159	반도체 공정 장비 EFEM 내부 설치 가능한 웨이퍼 결합 검사 장비		SK하이닉스
160	CMOS 이미지 센서에 적용 가능한 영상 처리 IP		SK하이닉스
161	Lidar용 VCSEL 및 Driver IC		SK하이닉스
162	Security용 고화질 Image Processing IP 또는 SoC		SK하이닉스
163	Automotive CIS용 Image Processing IP 또는 SoC		SK하이닉스
164	DDR5용 PMIC		SK하이닉스
165	DIMM 등 메모리 모듈에 사용되는 능동 소자 부품		SK하이닉스
166	PIM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IP 또는 요소 기술		SK하이닉스
167	EUV 장비 (고성능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및 관련 장비)		삼성전자(주)
168	분광 센서 모듈 기술, 후각 센서 모듈 기술		안심엘피씨
169	Etch 공정의 Chemical Tank 재질 변경 및 제작 방법 개선		(주)네패스
170	Cure 작업시 Fume 외부 누출 없는 Oven 장비 개발		(주)네패스
171	도금장비의 실시간 도금액 분석 및 첨가제 자동 투입 장치 (Auto Chemical Dosing System)		(주)네패스
172	Robot Position 이상 감지		(주)네패스
173	국내 테프론 재질 변화로 내구성 강화 (Chemical 사용 공정의 Parts 소재)		(주)네패스
174	비메모리반도체 검사 용 프로브카드의 마이크로 핀 삽입 조정될 시스템		티에스이(TSE)